

주소 일괄정정 신청서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24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 (대표자)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	팩스번호
	주소			

신청 내용	변경 전 주소	
	변경 후 주소	
	【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공부의 목록】	
	[]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 []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 대장에 기재된 주소 []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른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[]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 []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	[]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 [] 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[]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[] 「선박법」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의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 []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 []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류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 []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[] 기타: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문서의 변경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,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, 주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.

① 문자 메시지 [] ② 전자우편 [] ③ 팩스 []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대상 여부 확인	→	대행신청	→	공부의 주소정정	→	주소 일괄정정 결과 통보	→	통보
신청인	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 (도로명주소 담당부서)						공공기관장				시·군·구 (도로명주소 담당부서)

【첨부서류】

1.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1부
2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1부
3. 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른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
5.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1부
6.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
7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
8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
9. 「선박법」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부
10.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1부
11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「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
12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: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1부. 다만, 법 제14조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·변경·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세주소 부여·변경·폐지 신청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본문의 정정신고서와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3.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: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
14.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: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